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5월 12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5월 12일

3.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2조의 과세면제 조문중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임.

4. 주요골자

○ 제2조 ①항의 내용중

- 중복된 조문을 간결히 정리하고

○ 제2조 ①항 1호의 과세면제 대상사업 시행자의 과세면제 대상을

- 당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 하였으며

○ 제2조 ①항 2호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개선사업지구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와
- 주택 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행조례상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면제 대상 사업시행자의 과세면제 대상을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을 포함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 환경개선 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토지나 건출물을 소유한자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개선사업 지구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와 주택건설 추진법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본 개정안은 현행조례 제2조의 과세면제 조문중 중복되는 조문을 간결히하고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리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정부의 주택 정책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